

[사 건 명] 행심 2018 - 48

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 취소 청구

청구인 : ◇◇◇

피청구인 : ◎◎교육지원청교육장

[주 문]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.

[청구취지] 피청구인이 2018. 07. 10. 청구인에 대하여 한
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
금지결정 처분을 취소한다.

[재결이유]

I. 사건개요

가. 청구인 ◇◇◇은 인천 □□□ □□□ ■■■■ ■■■■ 상의 건물 지상 1층 전부
(면적 ■■■.01㎡, 이하 '이 사건 신청지'라고 한다)에 대하여 만화대여업을 개
설하고자 2018. 6. 20.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(이하 '이
사건 신청'이라고 한다)을 하였고, 피청구인은 2018. 7. 10. 경 지역교육환경보
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교육환경보
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을 하
였다.

나. 청구인은 2018. 7. 10.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, 청구인은 2018. 9.

17.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상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다.

II. 청구인의 주장

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

가. 만화카페는 그 내부구조가 밝고 건전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고, 이 사건 만화카페는 성인용 만화에 대하여는 분리진열하고 있고 CCTV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접근을 금지하고 있어서 교육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만큼,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.

나.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학교교육환경상대보호구역내에 있는 시설 중 당구장에 대하여 시설제외처분이 이루어진 것과 비교하면, 만화카페는 당구장보다 학교로부터 거리가 더 멀리 위치하고 유해성이 적기 때문에 형평성에 위배된다

다. 이 사건 만화카페는 이 사건 ▽▽▽▽중고등학교로부터 보이지 않고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주통학로가 아니어서 학생들의 이 사건 만화카페로의 접근성의 정도는 낮으며, 피청구인 관내 다른 학교장 및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의 만화카페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는 만큼,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

라. 청구인은 이 사건 만화카페를 개업하는데 많은 금액을 투자하였고, 만화카페는 청구인의 생계유지수단이며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면 큰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는 만큼, 달성될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, 남용한 것이다

Ⅲ. 피청구인 주장

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- 가. 이 사건 만화카페의 경우 시간당 요금을 납부하면 어떤 책을 선택하여 구독을 하는지 카운터에서 전혀 알 수 없고, 사업주가 일일이 청소년들에 대하여 제재 및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내린 것이다
- 나.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학교교육환경보호구역내 당구장에 대하여 시설해제를 한 것은 당구장이 체육시설업으로 지정되어 있고,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고, 당구장과 동일선상에 판단할 수 없으며 이 사건 학교 주변 현황 및 심의이력을 보면 심의신청 업종 대부분이 금지된 사실이 있다.
- 다. 학교장 의견서와 민원인의 의견서는 심의의 참고자료에 불과하고, 또한 일부의견이며,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시 이 사건 만화카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학교학생들이 1층의 만화카페를 출입할 경우, 같은 건물 2-3층에 위치한 숙박업소가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과 근처 빌라의 주차장이 담배를 피우기 좋은 장소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신청지는 교육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
- 라. 청구인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제외 통보를 받은 후 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만화카페는 심의 전에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, 금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영업하여 불법 시설 무단 설치업소로서 이전, 폐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, 청구인이 이 사건 만화카페에 많은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험을

감수하고 자의로 한 것이고, 피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만큼,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

IV. 이 사건 처분의 위법여부

1. 관계법령

『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』 제1조, 제2조, 제8조, 제9조

2. 판 단

가. 인정되는 기초 사실

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, 증거자료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.

- 1) 이 사건 신청지는 ▽▽▽▽중학교 및 고등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79m,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182m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상대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
- 2)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내에서 2016. 경부터 교육환경상대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제외 심의를 받지 않고 만화카페를 영업하였다.
- 3) 청구인의 부는 2018. 4. 9.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만화대여업을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을 하였고, 피청구인은 2018. 4. 18. 경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해당행위 및 시설금지 결정을 하였다
- 4)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로부터 이 사건 만화카페를 양수받아 이 사건 신청지에

대하여 만화대여업을 개설하고자 2018. 6. 20.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(이하 '이 사건 신청'이라고 한다)을 하였고, 피청구인은 2018. 7. 10. 경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을 하였다.

5) 이 사건 만화카페 내부안에 흡연실이 있고, 이 사건 만화카페의 화장실은 외부에 있으며, 외부 화장실은 이 사건 만화카페 2층과 3층에 있는 여관의 통로와 연결되어 있다.

나.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, 남용하였는지 여부

1)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교육환경보호구역(상대보호구역)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(해제거부)하는 조치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,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,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, 학교의 종류와 학생수, 학교주변의 환경, 그리고 위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교,교량하여 신중하고 판단하여야 한다.

2) 이 사건 만화카페는 그 내부구조가 밝고 건전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고, 이 사건 만화카페는 성인용 만화에 대하여는 분리진열하고 있고 CCTV를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접근을 금지하고 있어서 교육환경에 유해하지 않는 만큼,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,

비록 이 사건 만화카페의 경우 성인용 만화에 대하여 분리진열하고 있고, CCTV를 설치하고 있기는 하지만, 이 사건 만화카페의 경우 보고자 하는 만화책을 카운터에 신청하여 확인한 후 구독하는 형태가 아닌 시간당 요금을 납부하면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만화책을 선택하여 구독하는 형태인 만큼, 청소년들의 성인용 만화에 대한 접근을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, 이 사건 만화카페의 경우에 내부에 흡연실이 있으며, 외부적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유해환경인 여관에 노출이 되는 만큼, 이 사건 만화카페가 교육환경에 유해하지 않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.

- 3)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학교교육환경상대보호구역내에 있는 시설 중 당구장에 대하여 시설제외처분이 이루어진 것과 비교하면, 만화카페는 당구장보다 학교로부터 거리가 더 멀리 위치하고 유해성이 적기 때문에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,

비록 당구장이 시설제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 사건 만화대여업을 제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, 만화대여업의 경우에는 이 사건 상대금지구역 내에 다른 사람이 청구한 제외신청에 대하여 2015. 12. 경 금지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등 현재까지 제외된 경우가 없고, 이 사건 만화카페의 경우에 시설제외는 당구장과는 별도로 그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만큼, 청구인의 형평성의 주장은 이유는 없다

- 4) 청구인은 이 사건 만화카페는 이 사건 ▽▽▽▽중·고등학교로부터 보이지 않고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주통학로가 아니어서 학생들의 이 사건 만화카페로의 접근성의 정도는 낮으며, 이 사건 학교장 및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의 만화카페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밝히고 있는 만큼,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,

이 사건 ▽▽▽▽중,고등학교 학교장은 학습상, 생활지도상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고, 이 사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위 위원회에 참석한 심의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금지결정을 하였던 만큼,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

- 5) 청구인은 이 사건 만화카페를 개업하는데 많은 금액을 투자하였고, 만화카페는 청구인의 생계유지수단이며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되면 큰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는 만큼, 달성될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손해가 크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, 남용한 것이라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,

청구인의 이 사건 만화카페에 대한 시설제외를 하지 않을 경우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, 청구인의 부친이 이 사건 만화카페의 경우에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 신청을 하지 않고 먼저 선투자를 하였던 만큼, 청구인 측의 귀책사유도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청구인이 입을 피해와 교육환경에 대한 공익상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볼 때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 교육환경에 대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에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, 남용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

V. 결 론

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는 만큼,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